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39

발의연월일: 2023. 1. 12.

발 의 자: 박상혁 · 김수흥 · 김윤덕

김정호 • 민형배 • 박 정

송옥주 · 유후덕 · 이소영

이정문 · 장철민 · 정성호

조오섭 · 진성준 · 최강욱

최인호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일대에 1,139 채에 이르는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의 사망으로 인해 수백명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 기에 처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전세 사기 국면 속, 많은 전세 임차인들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포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보증보험시장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입 비율은 93%에 달함.

이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어 현재 자기자

본 60배인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7조).

법률 제 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60배"를 "70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제27조(보증의 한도)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	
기자본의 <u>60배</u> 를 초과하지 아	<u>70 भ</u> ो
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u>